#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서영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3394

발의연월일: 2021. 11. 18.

발 의 자:서영석・김민기・김상희

김수흥 · 김원이 · 양정숙

이용빈 · 이정문 · 이해식

인재근 · 임종성 · 최종윤

의원(12인)

#### 제안이유

현행법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피해학생 및 신고·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,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, 금지 조치의 범위에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를 통한 2차 가해가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음.

또한,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는데, 그 과정에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과의 분리, 특별교육의 의무화, 제도의 실효성 강화 등의 지적이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인터넷,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접촉, 협박 및 보복 행위도 가해학생에게 금지되는 행위에 포함되도록 하고 특별교육을 받는 기관에 대안교육기관이 포함되도록 규정하며, 가해학생 보호자의 노력 의무를 추가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·교육의 효과를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17조).

#### 법률 제 호

####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7조제1항제2호 중 "금지"를 "금지."로 하고,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피해학생이나 신고·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"을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"로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기관에서 특별교육"을 "기관(「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한다)에서 특별교육(이하 "부가된 특별교육"이라한다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이 경우 인터넷, 휴대전화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
- 1. 피해학생이나 신고·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
- 2. 불특정다수의 피해학생에 대한 반복적인 학교폭력 행위
- ⑧ 제1항제2호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의 보호자는 가해학생이 해당 조치를 적절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#### 부 칙

-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7조제3항 및 같은 조 제8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특별교육 이수에 관한 적용례)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처분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 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7조(가해학생에 대한 조치) ①	제17조(가해학생에 대한 조치) ①
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	
와 가해학생의 선도·교육을 위	
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	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	
조치(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	
경우를 포함한다)를 할 것을	
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,	
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	
령으로 정한다. 다만, 퇴학처분	
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	
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	
니한다.	<u>.</u>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피해학생 및 신고·고발 학생	2
에 대한 접촉, 협박 및 보복	
행위의 <u>금지</u> <후단 신설>	<u>금지.</u> 이 경우 인터넷,
	휴대전화 등의 정보통신망을
	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
3. ~ 9. (생 략)	3. ~ 9.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	2
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	
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	

피해학생이나 신고·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.

#### <신 설>

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하며,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.

④ ~ ⑦ (생 략) <신 설>

⑧ ~ ⑫ (생 략)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
ᅙౖ}
1. 피해학생이나 신고·고발 학
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
<u>행위</u>
2. 불특정다수의 피해학생에 대
한 반복적인 학교폭력 행위
3
기관(「대안교육기관에
관한 법률」에 따른 대안교육기
관을 포함한다)에서 특별교육
(이하 "부가된 특별교육"이라
· 한다)
<u>.</u>
· ④ ~ ⑦ (현행과 같음)
<ul><li>⑧ 제1항제2호의 처분을 받은</li></ul>
가해학생의 보호자는 가해학생

이 해당 조치를 적절히 이행할

9 ~ 13 (현행 제8항부터 제1

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### 2항까지와 같음)